

##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들에 대한 연방(non-local) 당국의

### 사법활동(이민법 집행 포함)에 대한 학교장 지침서

본 문서는 연방수사국("FBI") 또는 이민세관수사청("ICE")등을 (통합적으로 "비지역(non-local) 법집행 수사관") 포함한 비지역 법집행 수사관들이 뉴욕시 교육청 산하 학교 시설이나 학생, 또는 학생기록에 접근을 요구할 때 대처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뉴욕시 경찰국("NYPD")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뉴욕시경의 뉴욕시 학교 내 활동은 기타 문서와 정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역 사법기관 수사관들이 귀하의 학교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선 씨니어 현장 법률자문(Senior Field Counsel: "SFC")에게 연락을 취하고 본 지침의 끝부분에 나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학교내 접근은 전적으로 법에 의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만, 그리고 SFC의 자문을 거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 학교 시설 접근 관련법

뉴욕시 경찰국("NYPD")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보안을 전담하고 있으며, 뉴욕 경찰은 교육청과 NYPD간의 양해각서 및 교육감 규정에 근거하여 뉴욕시 학교에 출입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NYPD 경찰관 및 학교 안전요원은 학교 내에서의 경찰 활동을 규정하는 오랜 전통의 NYPD 규범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ICE 수사관을 포함한 비지역 사법기관의 수사관들은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학교시설이나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있을 때, 적법한 영장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매우 긴급한 상황일 때.

#### 1. 동의

교육청에서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비지역 사법기관들이 학교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학교장 및 기타 학교 관련자들도 이에 동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2. 적법한 영장

ICE 수사관을 포함한 비지역 사법기관의 수사관들의 영장을 통한 특정 행동, 가령 수색이나 체포 활동 가능 여부는 영장의 범위 및 해당 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는지 또는 행정적으로 발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유효한 영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영장이 판사가 발부한 적법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의한 학교시설물의 접근을 허가하기 전에, 영장의 사본을 입수하여 SFC에게 연락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ICE 수사관을 포함한 비지역 사법기관의 수사관이 어떤 형태로든 영장을 제시할 경우, 영장을 SFC에게 제공하고 후속 지침을 기다리십시오.

### 3. 긴급한 상황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나 목숨이 달렸거나 신체적 위해를 입을만한 긴박한 상황인 경우, 즉시 SFC에 연락하고 학교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NYPD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현 ICE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사활동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도 이어져 적용되고 있는 ICE 및 미 관세국경 보호청 규정에 의하면, 학교를 포함한 민감한 장소에서의 체포, 심문, 수색 및 감시활동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래 학교에서의 사법활동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 학생 기록 요구

현 ICE의 민감한 장소에서의 활동 규정은 학교 관리나 직원으로부터 기록이나 기타 문서를 입수하는 것, 또는 소환장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연방 사생활 보호법(건강 또는 안전상의 비상상황 제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원명령이나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에 의한, 또는 학생의 부모나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 학생 본인이 문서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기관의 수사관이 학생 기록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CE 수사관을 포함한 어떤 수사관이라도 학생 기록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수사관이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 사본을 귀교 담당 SFC에게 제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SFC로부터 후속 지침이 있을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 일반적인 절차—ICE를 포함한 비지역 사법기관 수사관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귀하의 학교를 찾아왔을 때:

1. 학교 안전요원 데스크에서 수사관을 맞이하십시오.
2. 학교 안전요원의 데스크에서 수사관의 성명과 배치/ID 번호, 상관의 전화번호, 방문 목적 및 학교 정규 일과시간 중에 귀하의 학교를 방문한 이유 등을 물으십시오.
3. 수사관이 제시하는 모든 문서를 입수하십시오 (예, 소환장, 수색영장, 체포영장 등).
4. 수사관의 요청에 응하기 전에, 귀교에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에게 이를 알리고 후속지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리십시오.
5. 법률자문으로부터 소식이 올 때까지 수사관은 반드시 학교 건물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알리십시오.
6. 귀교 담당 SFC에게 이를 알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입수한 문서 및 기타 세부사항을 SFC에게 모두 전달하십시오. SFC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마십시오.
7. SFC로부터 자문을 구한 후에 해당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8. 학교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관할 NYPD 경찰서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안전부(School Safety Division)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9. 비지역 사법기관 수사관이 귀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관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입수한 후 학교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SFC와 관할 NYPD/학교안전부에 알리도록 하십시오.

### 관련 교육감 규정

본 지침은 기존의 교육감 규정을 보충합니다. ICE 수사관을 포함한 비지역 사법기관 수사관이 체포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 규정 A-412, 섹션 III(C)의 절차에 따르십시오. ICE 수사관을 포함한 비지역 사법기관 수사관이 기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교육감 규정 A-820의 내용이 적용됩니다.